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의안번호	794
------	-----

제출년월일 : 2003. 3. 18.

제출자 : 고성군수

1. 제정이유

- 신고성건설 추진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며 체계적으로 조사·연구·분석하고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의 개발 및 계획을 수립하여 정책개발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현행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를 폐지하고 그 내용을 보완하여 새로이 이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임.

2. 주요골자

- 가. 민선3기를 맞아 변화와 개혁과 발전을 갈구하는 군민의 성원에 힘입어 새로운 고성을 건설하기 위한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의 심의·자문 기능(안 제3조).
- 나.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의 구성 및 위원의 임기(안 제4조 및 제5조).
- 다. 신고성건설추진의 조사·연구·정책개발 활동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분야별 기능을 고려 분과위원회 설치·운영(안 제6조).
- 라.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7조 내지 제14조).
- 마.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의 폐지(안 부칙 제2항).

3. 본 문

- 붙임과 같음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를 설치하여 고성군 발전에 관한 각종 과제를 현실적이고 체계적으로 조사·연구·분석을 실시, 주요 지역현안에 대한 정책개발 등 군수의 자문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무소의 위치) 신고성건설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사무소는 고성군청 내에 둔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자문한다.

1. 신고성건설을 위한 각종 정책개발에 관한 사항
2. 군정의 중요시책 추진에 관한 사항
3. 군 재정확충 방안에 관한 사항
4. 기타 군수가 부의 하는 사항

제4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18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임원을 둔다.

1. 10인이내의 고문과 30인이내의 자문위원
2. 위원장 1인
3. 부위원장 3인
4. 감사 2인

③위원회의 임원은 위원중에서 호선하여 군수가 위촉한다.

④위원은 고성군발전에 관심이 있는 자로 지역실정에 밝고, 주민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덕망 있는 자로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5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② 연임의 경우는 임기만료 10일전까지 재위촉하고, 재위촉이 없는 경우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③ 위원의 결원이 발생한 때에는 보궐위원을 위촉하여야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임기기간으로 한다.

제6조(분과위원회 운영) 위원회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분야별 기능을 고려 분과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7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사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 중 최고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8조(회의) ①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 및 임시회로 구분하다.

② 정기회는 매년 2월에 소집하고, 임시회는 필요시 수시로 소집한다.

제9조(안건) ① 위원회 회의에 부의할 안건은 간사가 취합하여 위원장이 결정한다.

② 부의할 안건은 위원회 개최 5일전까지 전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 또는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운영비) 군은 위원회의 자체 운영기금이 확보될 때까지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1조(공무원의 파견) 위원회의 운영 및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군 소속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제12조(운영규정)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와 규칙의 범위안에서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3조(간사와 서기) ①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과 서기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기획감사실장으로 하고, 서기는 정책개발담당으로 한다.

제14조(실비지급 등) 위원이 위원회 또는 분과위원회에 참석할 때와 위원회의 의결이나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고성군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폐지조례) 고성군조례 제1441호 고성군발전추진위원회설치운영조례는 이를 폐지한다.